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17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박정현 · 박균택 · 문진석
모경중 · 서미화 · 이주희
박민규 · 황명선 · 이학영
박홍배 · 이광희 · 이강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화재의 확산과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정되는데, 공장 내부 곳곳에 유증기와 기름때가 있었던 것과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 내 휴게실에 다수의 인원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개별 기관별로 감독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점검 항목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음.

현재 본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지방정부의 소방본부 등은 공장 등 건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축

물의 불법 증축 등 건축행위와 유증기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근거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종합적 예방이 어려움.

한편, 지난 6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소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소방안전이나 위험물 관리가 다른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2016년, 2018년, 2019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화재안전조사”를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이하 “합동검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합동검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검사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합동검사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장 화재안전조사</u> <u><신 설></u>	<u>제3장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u> <u>제16조의2(정부합동 화재안전검</u> <u>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u> <u>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u> <u>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u> <u>동 화재안전검사단(이하 “합동</u> <u>검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u> <u>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합</u> <u>동검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u> <u>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u> <u>치단체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u> <u>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야</u> <u>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u> <u>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u> <u>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u> <u>다.</u> <u>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제1</u> <u>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면 그</u> <u>결과를 관할 소방서 및 관계</u> <u>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u> <u>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u>

에 대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
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필
요한 경우 안전검사 분야별 전
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합동검
사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